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47
------	-----

2019. 9.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2015년 4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목적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마중물 사업으로 동북권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 통합관리운영 추진계획
-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 추진 필요성

- 초기 창업기업에 체계적·맞춤형·전문적 지원을 통해, 견실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통합관리 운영
-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연계 방안 추진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8 (구 청소차량 차고지)
- 건축규모 : 연면적 8,305 m^2 , 지하1층/지상4층
 - ※ 총 부지 : 7,663 m^2 , 연면적 : 17,745 m^2 (50+캠퍼스, NPO지원센터, 청년주택 포함 복합 건축)
- 시설개관 : 2020.10월 예정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42실, 개방형 보육실 100석 이상
- 소요예산 : 2,850백만원 (2020년 기준)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개관 준비 기간 포함하되,
차기 민간위탁시에는 2년으로 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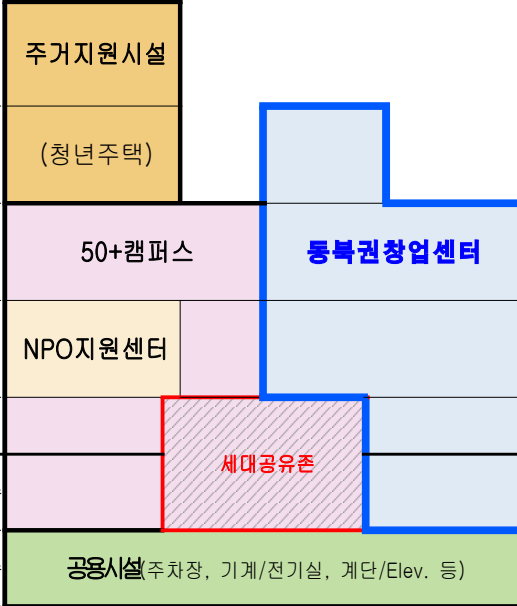
- 동의안은 동북권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동북권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 개요

- 서울시는 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베드타운화 된 창동·상계 일대 (97만^m²)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경제 허브로 육성하고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창업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창업수요의 충족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창업센터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임.
- 또한, 넓은 면적과 많은 거주 인구로 인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높고, 15개 종합대학이 위치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쉽고, 대학창업보육센터와 창업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역적 장점이 있음.

- 이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세대 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과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등 추진하면서 동북권 창업센터, 50+ 북부캠퍼스, 청년주택, NPO(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총사업비 486억원)를 건립 중에 있음.

〈동북권 창업센터와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동북권 창업센터 ○ 위 치 : 도봉구 창동 1-8 ○ 규 모 : 연면적 8,305㎡, 지하1층~지상4층 ○ 개 관 : 2020년 10월 예정 ○ 총사업비 : 256억 4천2백만원(국비 109억 6천8백만원 포함)
시설명(주관부서)	건축규모	연면적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구성
	지하2층~지상5층	17,744㎡	
동북권 창업센터 (투자창업과)	지하1층~지상4층	8,305㎡	
50+ 북부캠퍼스 (인생이모작지원과)	지하1층~지상3층	6,289㎡	
청년주거지원시설 (주택정책과)	지상 4~5층	2,512㎡ (48세대)	
동북권 NPO센터 (민관협력담당관)	지상2층	637㎡	

※ 자료 :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019.6. 서울시)

- 이 중 동북권 창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8,305 m^2) 규모로 조성되며 ▶독립형 보육실(42실) ▶개방형 보육실(100석 이상) ▶시제품제작소, 테스트랩 ▶다목적 강당과 푸드코트 등을 갖추고 있음.
- 서울시는 해당 센터가 준공되면, 향후 10년간 420여개의 창업기업 육성과 2,1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와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번 동의안은 신설되는 동북권 창업센터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서 창업가들에게 창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상시 제공하고 보육하는 업무를 민간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임.
- 창업 지원 분야는 창업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창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¹⁾.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28억 5,033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민간위탁 추진계획상의 민간위탁금(3개월분 7억 7,956만원)외에 민간위탁사업비(20억 7,077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임.
- 동북권 창업센터 개관이 2020년 10월 예정임에 따라 3개월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당초 8억 7,908만원→7억 7,956만원)과 신축 시설물의 내부 인테리어와 사무집기 구입 등의 자본형성적 경비인 민간위탁사업비를 포함하였음.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비 편성 현황〉

구분	운영원가 산정 (2016.10)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6)	민간위탁 동의안 (2019.8)
합계	32억 7,563만원	35억 1,633만원	28억 5,033만원
민간위탁금	32억 7,563만원	35억 1,633만원	7억 7,956만원
- 인건비	9억 4,447만원	9억 4,448만원	1억 8,987만원
- 운영비	8억 9,876만원	11억 7,545만원	3억 6,474만원
- 사업비	14억 3,240만원	13억 9,640만원	2억 2,495만원
민간위탁사업비	-	-	20억 7,077만원

주1) 인건비 : 인력은 17명으로 모두 동일함.

주2) 민간위탁사업비 :인테리어공사비 16억 23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4억 6,847만원

-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5억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그동안 다른 창업시설²⁾은 개관 준비기간 동안의 민간위탁금을 포함하는 데 반해 동북권 창업센터는 개관 이후부터의 위탁금만을 반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개관·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준비기간을 반영한 위탁금의 재산정이 필요함.
- 아울러, 인근에 조성 운영 중인 창업디딤터, 여성창업 보육센터(노원), 창업성장센터, 시제품제작소(성북),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동대문)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북권 창업센터만의 차별화된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2)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제정책실의 창업센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중 ‘청년창업센터’(2020.2월 개관→ 2019.10월부터 사전준비), ‘관악창업센터’(2020.9월 개관→ 2020.7월부터 사전준비)는 사전 준비기간을 최소 개관 이전 2개월 전부터 준비기간을 두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4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15.4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목적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마중물 사업으로 동북권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 통합관리운영 추진계획
 -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 추진 필요성
 - 초기 창업기업에 체계적·맞춤형·전문적 지원을 통해, 견실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통합관리 운영
-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연계 방안 추진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8 (구 청소차량 차고지)
- 건축규모 : 연면적 8,305 m^2 , 지하1층/지상4층
 - ※ 총 부지 : 7,663 m^2 , 연면적 : 17,745 m^2 (50+캠퍼스, NPO지원센터, 청년주택 포함 복합 건축)
- 시설개관 : '20.10월 예정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42실, 개방형 보육실 100석 이상
- 소요예산 : 2,850백만원 ('20년 기준)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개관 준비 기간 포함하되, 차기 민간위탁시에는 2년으로 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제2항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년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투자창업과 창업시설운영팀 유덕중(☎2133-4881)